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후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059

발의연월일: 2024. 8. 21.

발 의 자:윤후덕·정성호·임오경

홍기원 • 이기헌 • 임미애

김정호 • 박희승 • 박 정

이병진 · 정준호 · 이연희

박수현 · 김영진 · 박민규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 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함)를 두고 협의 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 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,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불필 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6항).

법률 제 호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6항 중 "위원중"을 "위원 중"으로, "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"를 "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"로, "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"를 "새로 시작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7조(협의회의 구성) ① ~ ⑤	제17조(협의회의 구성) ① ~ ⑤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
⑥ <u>위원중</u> 결원이 생긴 때에는	⑥ <u>위원 중</u>		
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위	제3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		
원을 위촉하여야 하며, 그 보궐	명 또는 위촉하여야		
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			
기간으로 한다.	<u>한다</u> .		
⑦ ~ ⑨ (생 략)	⑦ ~ ⑨ (현행과 같음)		